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진화 보조 신설 등〉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69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개요	1
--------------	---

[차규근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검토의견	4
----------------	---

I. 개 요

【차규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08.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08.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9.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

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 (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의 산불진화 업무 보조’를 추가하거나(차규근의원안 제7조제5호 신설),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추가하려는 것임(정춘생의원안 제7조제5호 신설).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7조(임무)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10호 단서 ¹⁾ 에 따른 산불진화기관 의 산불진화 업무 의 보조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임무)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산불의 예방 및 진 화 활동</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생략)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u>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u>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에 따 른 임무의 수행을----- ----- ----- -----.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보조하게 하거나 산불 진화활동을 하게</u> ----- ----- -----.

한편,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⁴⁾.

<현행법령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근거	의용소방대원 임무
법 제7조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 거	의용소방대원 임무
시행규칙 제13조	가.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나.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다.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2항),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제1항)⁵⁾.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시·도에 의용소방대 3,979개 대(隊)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92,484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24년도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270,137회 1,286,330명이 활약한 것으로 나타남.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⁶⁾>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임 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각종 행사장 안전지원 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⁷⁾	
전문의용소방대 ⁸⁾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⁹⁾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2024.12.31. 기준): 전국 18개 시·도 3,979개 대 92,484명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자료: 소방청)

6)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1] 참조

7) 지역의용소방대도 일반의용소방대(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됨. 소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밑에 하위조직으로 지역의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으로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이 있으나 전국 산불예방 및 감시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¹⁰⁾¹¹⁾,

현행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 진화 보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불진화 등의 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¹²⁾.

이에 개정안들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진화 업무를 보조’할 수

용소방대를 설치하는데, 지역의용소방대는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와 함께 활동함.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9)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 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10) -공중진화대(국가, 104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국가, 435명+6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가·지방자치단체, 9,604명), 산불감시원(자체수행, 12,010명)

- 공중진화대 등 관련 조직의 운용규모, 운영주체 등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11) 출처: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25. 6. 318면.

12) 차규근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있는 근거를 추가하거나 (차규근의원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추가하여(정춘생의원안)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차규근안	정춘생안	비 고
추가된 의용소방대 임무	-산불진화업무 보조	-산불진화 활동 -산불의 예방 활동	
추가 임무 규정 방식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한 산불진화기관(긴급구조기관)의 업무 보조	- (현행 의용소방대 임무 규정방식과 동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공포한 날	

다만,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진화 업무(보조) 및 산불 예방 업무(보조)를 추가적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 현재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수행하는 임무,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감안하고 의용소방대 임무를 규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제적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의 임무를 긴급성, 피해의 양상·정도에 따라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구분하면서,

소방청이 수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화재·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은 ‘소방활동’으로(제16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이 수행하는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제16조의2), 화재나 재난은 아니지만 생활에서의 안전과 위험제거를 위한 활동을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음(제16조의3)¹³⁾.

13)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한편, 개정안들이 명시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업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음(제16조의2제1항제1호).

따라서, 이 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의 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고, 소방대의 업무에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이 명시된 이상 소방대의 일원인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에도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보조’가 포함된다고 해석됨.

또한, 현재도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집하는 경우 산불진압 보조 및 주민대피 유도, 산불 예방 안전 수칙 홍보활동 보조, 산불 예방 순찰 등 소방청의 산불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 12. 26.>

<2025년도 영남권 산불진압 관련 의용소방대 동원 현황>

구 분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활동기간	'25.3.21~'25.4.1	'25.3.22~'25.4.2	'25.3.22~'25.3.28	'25.3.22~'25.3.26
발생장소	산청군 사천면 일대	의성군 안평면 일대	울주군 온양면 일대	김해시 한림면 일대
활동인원	1,390명	7,170명	715명	130명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 산불동원 통계>

연 도	산불 투입건수(건)	산불 투입인원(명)
2020	391	7,074
2021	260	3,873
2022	386	12,817
2023	393	9,152
2024	171	2,271
2025.08.	296	14,742

(자료: 소방청)

다만, 현행법이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 등의 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제17조¹⁴⁾),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소집수당을 지급하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에 산불 진화 업무(보조) 및 산불 예방 업무(보조)가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나 운영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산불 진화 지원도 소방업무의 연장선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므로 지휘체계의 일관성과 임무수행의 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의 보조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관하여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진화 보조’를 신설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나,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또는 ‘산불예방 보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규근의원안이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의 산불진화 업무 보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불예방 업무(보조) 역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예방 업무(보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예방 업무는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 숲가꾸기, 내화수림대 조성,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인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예방 업무는 의용소방대의 설치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이라는 점, 기후 위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산림과 도시의 경계 모호화 등 화재 발생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의 세부 내용을 재분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¹⁵⁾,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변경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제적 측면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이 법에서 열거하는 방식 보다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의 업무와 연동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¹⁶⁾¹⁷⁾.

15) 현재 산불 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점점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산불 진압에 소방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동 법률안들에 대하여 소방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긍정적인 입장임.

* 의안번호 제2212363호,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213118호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안

16) 예를 들면, 제7조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그 밖에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대 업무의 보조”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그 밖에 개정안들은 제7조를 개정하면서 제9조제2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9조는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와 소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을 비상근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소방서장 등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제7조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담당하는 소방업무 중 의용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법률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위2, 제16조의3에 규정된 소방대 활동의 보조 업무인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별다른 논란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소방대 활동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등 소방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입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임.

17)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이 법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제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산불 진화 및 예방과 관련한 의용소방대 임무에 “보조” 용어를 규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이 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조문 간의 용어 정합성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 업무의 “지원” 또는 “보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정춘생의원안이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산불진화” 활동, “산불예방”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차규근의원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산불진화기관의 산불진화 업무의 보조”를 추가하고 있음.

차규근의원안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불진화기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즉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추가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한 산불 진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제10조제1항)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소방기본법」과 관련지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소방대의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규근의원안과 정춘생의원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의 용어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법문을 “산불 ‘진압’ 업무의 보조”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소방대원이 수행하는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고, 제9조제2항은 소방서장 등이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문임.

개정안들은 소방서장 등이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제7조에 따른 임무수행(차규근의원안)” 또는 “소방업무의 보조와 산불 진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내용을 제9조 제2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의 구성원인데,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대의 현장 활동보다 그 범위가 넓고, 현행법에도 소방업무의 일종인 화재예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7조제4호),

소방서장 등이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법과 같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함”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간의 체계 적합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 업무의 본질은 소방업무의 보조에 있으므로 안 제9조 제2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의용소방대 개요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2024.12.3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전문·전담
대수(대)	3,979	1,419	1,306	172	1,082
현원(명)	92,484	35,571	30,742	4,281	21,890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구분	총계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보조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0,137	6,447	1,386	5,712	88,902	34,815	41,872	91,003
인원 (명)	1,286,330	33,539	8,495	27,050	446,142	145,443	198,567	427,094

참고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중진화대 비교

(자료: 산림청)

구 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민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민간)	공중진화대 (공무원)	산불감시원 (민간)
운영 규모	공무직 495명	기간제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104명	12,010명 (지방자치단체) * '25년 기준
운영 주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간	12개월	6개월 (산불조심기간 전후 180일)	연중(공무원)	6개월 내외 (산불조심기간 전후 180일 내외)
주요 대상	험준지, 야간산불 등 대응 -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에 우 선 투입 - 선단·측면 산불 투입	평이한 산림 등 산불대응 - 일반 산불진화 투입 - 잔불진화, 뒷불 감시	암석지, 고산지 등 산불 대응 -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에 우 선 투입 - 선단·측면 산불 투입 - 헬기 인명 구조 - 산불진화 지휘 보조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내 및 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사고 현장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등
기타 사항	서류·면접·체력 검정을 통해 채용, 산불진화에 전문으로 투입	지역 주민으로서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훈련 및 공중투입과 인명구조 등 활동	○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음(지방비 100%) ○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